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2569
등록일자	2022. 12. 23.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 목 차 |||

I. 감사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 중점사항	1
II. 감사결과	2
1. 총 평	2
2. 지적사항	4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8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8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8
3. 감사결과 처분 기준(참고)	9
IV. 행정사항	10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I

개 요

1. 감사목적

- 우리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예산집행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이용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2. 10. 31.(월) ~ 11. 11.(금)
- 대상부서 : 토목과
- 감사범위 : '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전반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 총 59개소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현장)감사 병행
- 감사장소 : 감사담당관 내 감사장
- 감사인원 : 6명(기술감사팀 4명, 외부전문가 2명)

3. 감사 중점사항

- 일반교량, 보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분야 예산집행 및 시설공사 적정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등

II

감사 결과

1. 총 평

이번 감사는 2019.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토목과에서 추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특정감사이다.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 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주기(안전등급 “C” 이하, 반기에 1회 이상)에 따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의 전산처리가 양호하게 되고 있다.

2022. 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토목과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도로시설물 4개소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 도로시설물 총괄 현황

(2022.10. 기준)

구분	계	일반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차도육교	굴다리	복개구조물	사면
총계	59	15	2	7	2	1	4	28
(시설물 안전법) 3종 시설물	18	4	2	7	2	1	-	2
그 외 시설물	41	11	-	-	-	-	4	26

○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2022.10. 기준)

시설명	구분유형	구조	연면적(m ²)		준공일	관리형태
			폭(m)	연장(m)		
홍은대교	교량	RC-Slab	15	24	'82.1.1.	직접
홍제3교	교량	RC-Box	15	35.6	'79.	직접
충정2교	교량	RC-Slab	6	45	'95.12.31.	직접
무명교	교량	RC-Slab	7.8~9.9	18~19.5	-	직접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 여부와 시설공사 예산집행 적정여부에 대하여 실지 감사를 시행하였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위주 점검 등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 실태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 하였다.

감사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적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소홀 등 시설공사 예산집행 부적정(4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1건),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부적정(1건), 교량 보수부 박리구간 보수 등 추가 보수 및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1건)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세부내용을 보면 그동안 감사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대부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감사사례 교육 및 전파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적사항

1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업무 소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19년~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음.

2 설계변경(정산) 적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2019년 ○○○○○○○○○○○○○○○○○○○(연간단가)의 신축이음보수를 실제 0.51m³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정산) 시행시 정산수량을 1m³ 로 적용하여 공사비 1,135천원을 과다 지급 하였음.

3 준공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사의 잔토처리, 보도블록 걷기 및 포장을 실제 시공량 보다 과다하게 적용한 이후 설계변경이나 정산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1,337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4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호에 따르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에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20백만원으로 초급기술자인 경우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선임해야 함에도, 선임된 건설 기술인은 초급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5 **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공사의 신규비목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종은 표준품셈과 서울형품셈에 현장여건과 작업의 능률을 고려하여 일일 시공량 (1,300㎡~5,000㎡)을 반영해야 함에도, 본 사업에서는 이보다 작은 800㎡의 시공량만을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8,50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6 **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 2020년 ○○○○○○○○○○○○○○○○○○○의 신규비목인 잡철물 제작·설치 공종은 서울형품셈에 따라 데크길 하부철물 제작·설치품을 반영해야 함에도, 잡철물 제작·설치품을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7,30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7 추가보수 등 지적사항

감사기간(2022.10.31.~11.11.) 동안 외부전문가(토목시공 및 토질분야 2명)와 함께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한 10개 현장을 선별하여 시공상태 적정여부 등 현장 조사한 결과 3개 현장에서 일부 보수부 박리 발생 등 추가 보수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과 업무 개선사항이 조사되었음.

☞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추가보수 지적사항 등 - 지적사항

연번	시설물명	지적사항	비고
1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부 박리 발생에 따른 재보수 검토 ·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구조물 열화가 촉진되므로 조류방지 시설 보수 및 추가 설치 · 시설물 주변의 타관에 대한 관리기관 표찰 제작·설치, 비상시 연락체계 확립 	
2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부 하자기간 확인후 신속한 보수, 보강 필요 · 경관등 주변 조류 배설물 적치로 경관등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류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경관등 보수 필요 · 상부 교면포장으로 발생된 아스팔트 폐자재 처리 필요 	
3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주변의 타관에 대한 관리기관 표찰 제작설치, 비상시 연락체계 확립 · 구교와 신교 접합부 누수가 발생되었으므로 배수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 	

- 업무 개선 사항

연번	시설물명	업무 개선사항	비고
	공통분야 (시설물 보수)	<p><보수·보강 재료의 신중한 선택 및 시공시 품질확보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재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기계열 성분이므로 부착력이나 접착력 확보와 보수성능 향상을 위한 물성이 유사한 무기계열의 재료 사용 검토 · 단면보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모르타르 작업시 양생되기전에 콘크리트 건조로 인하여 박리·박락이 자주 발생하므로 시공전 사전 가수는 물론이고, 시공후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현장관리 검토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2. 12. 21.(수) 14:00
- 심의위원 : 6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붙임1. 참조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원, 명)

연번	안 건 명	심의결과		
		처분 종류 ¹⁾ (안)	재정상 조치금액 (안)	신분상 조치인원 (안)
총 7건 (처분 총7건: 시정 6, 주의 1)		7	환수 0000	1
1	도로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 소홀	시정		
2	설계변경(정산) 적용 부적정 (신축이음보수)	시정	환수 0000	
3	준공 검사 소홀 (잔토처리, 보도블록 포장)	시정	환수 0000	
4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부적정	주의		1
5	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시정	환수 0000	
6	설계변경 신규비목 적용 부적정 (잡철물 제작설치)	시정	환수 0000	
7	추가 보수 등 지적사항	시정		

1) 처분종류

- 시정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환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교정 및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훈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처분기준(참고)

○ 징 계

- 「지방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공무원 신분상 조치]

- 훈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IV

행정사항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 조치방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2.)에 따라 2개월 이내 조치하고 결과 제출
 -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3. 2. 24.(금)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